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0. 9. 28.>

긴급임시조치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성 명	
	자 격 []피해아동등 []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[]변호사 []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[]아동보호전문기관장	
	주 소	
	전화번호	팩스번호
아동학대 행위자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(세)
	피해아동등과의 관계	전화번호
	주 거	
피해아동등	성 명	성 별
	생년월일(나이)	전화번호
	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	
긴급임시조치의 내용 (중복신청 가능)	[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(법 제19조제1항제1호)
	[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(법 제19조제1항제2호) 기준지: []주거 []학교·학원 []보호시설 []병원 []그 밖의 장소()
	[]	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(법 제19조제1항제3호)
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	별지와 같음	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**경찰서장**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